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9조와 하위법령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목 차

| | |
|------------------------------------------------------------------------------------------------------|----------|
| 1. 소독의 의미 및 소독의무 | 3 |
| 1. 소독이란 무엇이며 방역과 어떻게 다른가요? | 3 |
| 2. 왜 소독을 해야 하나요? | 3 |
| 2. 소독의무 대상자(소독의무 주체) | 5 |
| 3.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독의무주체는? | 5 |
| 4.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 5 |
| 5.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 6 |
| 6.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었다면 직접소독이 가능한가요? | 7 |
| 3. 소독의무 시설 | 8 |
| 7. 소독의무시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8 |
| 3-1. 복합용도의 건축물 | 8 |
| 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 8 |
| 9.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의 용도가 2가지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인가요? | 9 |
| 10.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6층) 중 1, 4, 6층만 사용하고 있어서, 실 사용 면적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가 안되는데 소독을 해야 하나요? | 9 |
|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세대의 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 소독의무대상인가요? | 10 |
| 12. 무인으로 운영되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소독을 해야 하나요? | 10 |

3-2. 공동주택11

- 1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공간을 제외한 외부 공용부분만 소독을 해도 되나요?11
- 1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 시 공동주택 내 수목도 소독을 해야 하나요?11
- 15.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놀이터의 경우 소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소독횟수의 기준은?12
- 16. 입주가 시작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직 미입주 세대가 많은데 소독을 하여야 하나요?13

3-3. 기타13

- 17. 모텔의 20실 객실 중 1실을 창고로 바꿔서 객실 수가 19실이 되었다면 소독의무시설이 아닌가요?13
- 18. 100명 이하의 요양원일 경우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14
- 19.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인 취사시설이 없는 기숙사의 경우 소독의무 시설인가요?14
- 20.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 정글짐, 바닥재인 모래, 충격흡수용 매트 등의 어린이 놀이 시설물이 소독의무시설인 학교 시설에 포함되는지?15
- 21.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탁급식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독의무대상은 집단급식소인지 위탁급식영업소인지?16
- 22. 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는 소독의무시설인가요?17
- 23. 객실 수 3개짜리 펜션은 소독의무시설인가요?17
- 24.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으로 건축된 종교시설은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나요?18

4. 소독 횟수19

- 25.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와 300제곱미터가 안되는 식품접객업소가 입점해 있을 경우 소독횟수 기준은?19
- 26. “복합용도의 건축물”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를 운영하는 경우, 소독 횟수는 어느 시설 기준에 맞추어 소독하여야 하나요?19
- 27.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중인 경우 소독횟수 기준은?20
- 2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21
- 29. 소독의무시설인 학교의 경우 하절기는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2개월이란 60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소독 실시 주기)22
- 30. 공동주택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만 소독하면 인정이 되나요?22
- 31. 일반음식점의 경우, 하절기 식수 감소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할 경우에도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나요?23

5. 소독업의 신고 등(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24

- 32.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은 근린시설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나요?24
- 33.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 상 ‘공장’일 경우 소독업 인가가 불가능한가요?24
- 34. 소독업 신고시 사무실과 창고의 간격이 300m이내여야 하나요? (사무실과 창고 간 거리)25
- 35. 소독업 신고시 사무실과 창고가 각각 다른 자치구에 위치할 경우 소독업 인가가 불가능한가요?25
- 36.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과 창고를 파티션으로 구획해도 되나요?26
- 37. 소독업 신고 시 1개의 창고를 구획하여 2개의 회사에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26

| | |
|-------------------------------------------------------------------------------------------------------------|-----------|
| 38. 2명의 소독업자가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소독업소를 개설 할 경우 신고수리가 가능한가요? | 27 |
| 39. 시행규칙 별표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따르면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없이 대표자가 직접 소독 가능한가요? | 27 |
| 40. 소독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 28 |
| 6. 소독업의 변경신고 | 29 |
| 41. 소독업 종사자 변경 시, 소독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29 |
| 4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30 |
| 43.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를 위해 대표자를 추가 하는 경우 소독업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 30 |
| 44. 소독업 신고 후 시설 위치를 변경한 경우 소독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31 |
| 7. 소독업자(종사자)의 소독 실시 | 32 |
| 45. 음식을 납품하는 차량을 소독할 경우 차량소독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 32 |
| 46. 소독업체에서 소독약만 팔고 실제 소독은 하지 않고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 32 |
| 47. 소독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해도 되나요? | 33 |
| 7-1. 소독제(소독 약품) | 33 |
| 48. 소독 시 사용가능한 소독약품은 무엇인가요? | 33 |
| 49.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4 |

| | |
|-----------------------------------------------------------------------------------------------------|-----------|
| 8. 소독업자(종사자)의 교육 | 35 |
| 50. 소독업자이면서 소독업무 종사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교육만 받으면 되는지, 종사자로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5 |
| 51.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교육을 한명만 받아도 되나요? | 35 |
| 52. 하나의 법인에 소독업 신고자와 법인 대표자가 다른 경우, 소독업자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 35 |
| 53.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소독을 할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6 |
| 54.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소독업 종사자가 될 경우 소독업 종사자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 36 |
| 55.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10년 후 다시 소독업 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 37 |
| 56. 소독업무 종사자가 소독업 교육을 받은 후 이직할 경우 교육을 받은 시점부터 3년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37 |
| 57.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단체가 방역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 38 |
| | |
| 9.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 39 |
| 58. 소독의무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처벌규정이 있나요? | 39 |
| 59. 허가되지 않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 경우 처벌기준은? | 39 |
| 60. 소독업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40 |
| 61. 지자체(보건소)는 소독의무시설에 소독의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소독의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소독을 하지 못한 건데 과태료 부과는 억울합니다. | 41 |

| | |
|----------------------------------------------------|----|
| [부록] “소독 관련 법령” | 43 |
|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5 |
| 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
| I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1 |
| IV. 별표, 별지 | 53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53 |
| [별표 5]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54 |
| [별표 6]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57 |
|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60 |
|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62 |
|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63 |
|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 64 |
|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 | 66 |
| [별지 제25호서식] 소독업 신고증 | 67 |
|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68 |
| [별지 제30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 69 |

●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

| | |
|--------------------------------|----|
| 1. 소독의 의미 및 소독의무 | 3 |
| 2. 소독의무 대상자(소독의무 주체) | 5 |
| 3. 소독의무시설 | 8 |
| 3-1. 복합용도의 건축물 | 8 |
| 3-2. 공동주택 | 11 |
| 3-3. 기타 | 13 |
| 4. 소독 횟수 | 19 |
| 5. 소독업의 신고 등(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 | 24 |
| 6. 소독업의 변경 신고 | 29 |
| 7. 소독업자(종사자)의 소독 실시 | 32 |
| 7-1. 소독제(소독 약품) | 33 |
| 8. 소독업자(종사자)의 교육 | 35 |
| 9.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 39 |

1. 소독의 의미 및 소독의무

질의 1. 소독이란 무엇이며, 방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근거,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임.

* 소각, 증기소독, 끓는물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방법)

- ‘방역(防疫)’이란 한자어 그대로 ‘역병을 막는다’ 는 의미로써 감염원 제거, 예방주사 등 면역관리,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감염원 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칭함.
- 따라서,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질의 2. 왜 소독을 해야 하나요?

- 소독의 법적 취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용이하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쥐, 위생해충,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법령에서 규정한 소독의무시설은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특정 기준 (예컨대, 건축물 규모, 이용자 수 등)을 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 기준에 미달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소독 실시는 권장 사항임.
- 덧붙여, 소독은 업무 특성상 독성 물질과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못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같은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록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각 호 참조(p.36)

2. 소독의무 대상자(소독의무 주체)

질의 3.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독의무 주체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1호의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자(통상 관리사무소장)에게 소독의무가 있음.
- 만일 하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자(통상 관리사무소장)가 없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점 사업장 모두 동등하게 소독의무가 있으며, 공동 분담 또는 개별 분담 여부 등은 사업장 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됨. 소독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벌에 대한 책임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됨.
- 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소독의무 대상임은 명백하므로, 공동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기]의 소독횟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질의 4.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만일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면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의무가 부여되지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급식영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면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급식영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소독 실시의 주체가 달라짐.

질의 5.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추었을 때 직접 소독할 수 있음.

〈시행규칙 별표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2. 장 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2014.12.31.)
-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요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질의 6.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도 규정된 장비를 갖추었다면 직접소독이 가능한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만 관할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면 **소독을 직접 할 수 없으며, 소독업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함.**

3. 소독의무 시설

질의 7. 소독의무시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기의 “대통령령”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가리키며, 동 조항의 각 호(13종)에 속하는 시설이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함.

3-1. 복합용도의 건축물

질의 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11호에서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함.

- 법령상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로 구성된 건축물을 일컬으며, 용도의 종류가 같더라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다른 2종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포함함.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9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9.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의 용도가 2가지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 인가요?

- 건축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됨.

질의 10.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6층) 중 1, 4, 6층만 사용하고 있어서, 실 사용 면적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가 안되는데 소독을 해야 하나요?

-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의미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함.

- 다만, 2, 3, 5층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므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독 시에는 실제 사용 공간 1, 4, 6층만 소독하는 것은 가능

* 단,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는 공간(공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권고

질의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세대의 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 소독의무시설인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고
 - 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음.

* **질의 8.** 참고

- 따라서, 아파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므로 제13호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제11호 2천 제곱미터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소독의무시설이며
- 아래의 상가는 물론 위의 주거용 아파트도 감염병예방방법령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함.

질의 12. 무인으로 운영되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소독을 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소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소독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무인시설이라도 다수의 사람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소독의무가 부과됨.

3-2. 공동주택

질의 1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만 해도되나요? 개별 주거 공간도 포함하여 소독을 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인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단서조항으로 개별 세대 공간을 소독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전체를 소독해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독의무시설 지정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용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한 주거공간에서 감염병 발생 시 다른 주거공간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며, 바퀴벌레 등의 해충도 주거공간 간 이동 가능성이 크므로 공동구역뿐만 아니라 각 주거공간의 소독이 중요함.

질의 1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 시 **공동주택 내 수목도 소독**을 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13호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소독의무시설에 포함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공동주택 내 수목을 소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목의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수목을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산림청 소관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소독할 것을 권장함.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질의 15.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놀이터**의 경우 소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소독횟수의 기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 내의 놀이터 소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50세대 이상의 주택부터는 어린이 놀이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의 놀이터도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 전체가 소독 대상임.
- 덧붙여, 공동주택 내 놀이터는 공동주택의 소독횟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독하면 됨.
 - * 4월~9월 3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함.

질의 16. 입주 시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직 **미입주 세대**가 많은데 미입주 세대도 소독을 하여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3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소독하는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소독 시작 기준일은 해당 시설이 실제로 그 기능을 갖추었을 때 즉, **입주가 시작될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소독의 범위를 입주 세대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3. 기타

질의 17. 모텔의 20실 객실 중 1실을 창고로 바꿔서 객실 수가 19실이 되었다면 소독의무시설이 아닌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독의무시설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등록) 사항에 따라 결정됨.
 - 그러나, 20실→19실로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20실 중 1실을 창고로 바꾸었더라도 **숙박업 신고(등록)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계속 소독의무시설임.** 다만, 변경신고를 하여 법적기준에 미달한 객실수 (20실 미만)를 보유하였다면 소독의무시설이 아님.

- 덧붙여, 법령에서 규정한 소독의무시설은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특정 기준(예컨대, 건축물 규모, 이용자수 등)을 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 기준에 미달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소독 실시는 권장 사항임.

질의 18. 100명 이하의 요양원일 경우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5호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문의한 시설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독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요양원이 위치한 건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 해당하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거나, 건물 내 제6호에 해당하는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을 경우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질의 19.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인 취사시설이 없는 기숙사의 경우 소독의무 시설인가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한 기숙사의 경우, 공동 취사시설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기숙사가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7호의 소독의무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소독의무시설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 **질의 8** 참고

질의 20.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 정글짐, 바닥재인 모래, 충격흡수용 매트 등의 **어린이 놀이 시설물이 소독의무시설인 학교 시설에 포함되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교육부 소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교사(校舍), “체육장”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학교시설로 간주하여 소독의 범위에 포함됨.**
- 덧붙여, 학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연간 5회 이상(4월~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함.
- 덧붙여,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특히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질의 21.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탁급식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집단급식소인지 위탁급식영업소인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의무가 부여되지만 양자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양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짐.

*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위탁급식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질의 22. 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는 소독의무시설인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놀이터만을 별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은 시설 전체가 소독대상임.
-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소독의 방법, 소독횟수의 기준 등은 놀이터가 위치한 소독의무시설에 따라 적용하면 됨.

* 예) 소독횟수의 경우

- 복합쇼핑몰 내 위치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복합쇼핑몰에 해당,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 어린이집 내 위치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해당,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위치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1회 이상

질의 23. 객실 수 3개짜리 펜션은 소독의무시설인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포함됨

- 만약 운영하는 펜션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펜션업 등의 관광 편의시설업인 경우 소독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스텔업 등의 호텔업에 해당하므로 소독의무시설임.

-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할 경우, 소독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이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24.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으로 건축된 종교시설은 소독의무 시설에 해당하나요?

- 종교시설은 그 용도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 따른 사무실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건축물 이용 형태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음.
 -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로 구성된 건축물을 일컬으며, 용도의 종류가 같더라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다른 2종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포함함. (질의 8. 참고)
 - 따라서, 해당 종교시설이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4. 소독 횟수

질의 25.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와 300제곱미터가 안되는 식품접객업소가 입점해 있을 경우 소독횟수는?

-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1호에 해당하여 해당 건물의 모든 부분을 소독해야 함.
- 또한, 소독의무대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된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설은 복합용도 건축물과 해당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중 보다 강한(많은) 소독 횟수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따라서 숙박업소는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하면 되고, 식품접객업소(식당)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므로 복합용도의 건축물 소독 횟수대로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하면 됨.

질의 26. “복합용도의 건축물”내에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소독 횟수는 어느 시설 기준에 맞추어 소독하여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하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2개월 1회 이상(연 9회 이상) 소독하여야 함.
- 해당 식품접객업소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300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각각의 기준에 따라 중복하여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보다 강한 기준(식품접객업소 기준(연 9회 이상))을 적용하면 됨.
- 즉,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관리·운영자가 전체 건축물의 소독을 시행(연 5회 이상)하고 있다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추가 소독(연 4회 이상)을 하여 총 소독횟수(연 9회 이상)를 충족하면 됨.
- 해당 식품접객업소가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복합용도의 건축물 소독 횟수(연 5회 이상)를 따르면 됨.

질의 27.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중인 경우 소독횟수 기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제4항관련 [별표 7]에 따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는 동일함.
- 따라서,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 1회 이상을 준수하여 소독하면 됨.
- 덧붙여,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관리·운영자가 전체 건축물의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중복하여 소독할 필요는 없음.

질의 2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공장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가 아닌 식당)은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여 서로 소독횟수가 다름.

-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 (4월~9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3개월에 1회 이상
- * 연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4월~9월) 1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2개월에 1회 이상

- 전체 건물(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소독횟수(연 5회 이상)를 준수하였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연 9회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소독을 해야 하며, 미충족 시 같은 법 제8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 | | |
|------------|------------|-----------|
|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
| 라. 유흥주점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 바. 제과점영업 |

질의 29. 소독의무시설인 학교의 경우 하절기는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2개월이란 60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소독 실시 주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학교의 경우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2개월이란 하절기(4월~9월)에 4.1.~5.31., 6.1.~7.31., 8.1.~9.30.을 의미하며 3개월이란 동절기(10월~3월)에 10.1.~12.31., 1.1.~3.31.을 의미함.
- 즉, 4월부터 9월까지 4~5월, 6~7월, 8~9월 중 각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10~12월, 1~3월 중 각 1회 이상 시행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며, 소독일과 다음 소독일 간 되도록 2개월, 3개월 간격을 유지하여 소독할 것을 권고함.

질의 30. 공동주택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만 소독하면 인정이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공동주택은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년 동안 3회 이상 소독을 하였더라도 4~6월까지 1회 이상, 7~9월까지 1회 이상, 10~3월까지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됨.
- 만약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다목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됨.

질의 31. 일반음식점의 경우, 하절기 식수 감소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할 경우에도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소독의무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는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1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소독하여야 함.
- 연중 일부 기간을 미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 실시 여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휴업 기간은 해당 시설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독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휴업을 마치고 재개업 시 휴업 기간 동안 영업장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 추후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대비하여, 휴업 신고 등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5. 소독업의 신고 등(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

질의 32.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은 근린시설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세부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위임되어 있는 바, 형식적인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안전성 등의 문제 및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질의 33.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 상 ‘공장’일 경우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 ‘공장’ 용도라 하여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없음.

- 덧붙여, 시설 요건을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한 것은 독성 또는 휘발성을 함유한 방역소독약품과 거주공간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임.
- 또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일선 지자체(보건소 등)에 위임되어 있는 바, 형식적인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 담당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를 제한할 수 있음.

질의 34.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과 창고의 간격이 300m 이내여야 하나요?
(사무실과 창고 간 거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중 시설요건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라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실과 창고 간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기 ‘구획’의 취지는 안전을 위해 사무실과 독성 약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무실과 창고가 반드시 동일번지 또는 300m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독업 시설이 관할 시·군·구 내에 위치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 35.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과 창고가 각각 다른 자치구에 위치할 경우 소독업 인가가 불가능한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중 시설요건에서는 사무실과 창고간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다만, 소독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해야 하므로 같은 시·군·구 내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접 시·군·구도 가능.

질의 36.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과 창고를 파티션으로 구획해도 되나요?

- 사무실과 창고 간 구획의 취지는 안전을 위해 사무실과 독성 약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창고는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하며 사무실과는 반드시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 따라서 파티션, 커튼, 자바라 등으로 구획하는 것은 불가함.

질의 37. 소독업 신고 시 1개의 창고를 구획하여 2개 회사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8]에서는 창고시설을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을 우선 갖추어야 함.
- 상기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법적으로는 1개의 창고를 2개의 회사에 공동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타법 저촉이나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에 의해 신고 수리가 유보될 수 있음.

질의 38. 2명의 소독업자가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소독업소를 개설**할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8]에서는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부합한다면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소독업소를 개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음.**
- 다만, 형식적으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창고 및 필수 장비 등의 공유 및 안전관리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질의 39.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따르면 대표자 외 종사자를 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종사자 없이 대표자가 직접 소독 가능**한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소독업의 인력 기준은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표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소독업소에 근무하여야 함.**
- 소독의 규모 및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1인 작업은 소독작업의 안전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소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2인으로 인력기준을 설정한 것임.
- 따라서, 영업장 내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신고 수리 요건에 미충족 되는 경우** **이므로 소독업을 영위할 수 없음.**

질의 40. 소독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소독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모두 갖추어야 소독업 신고수리가 가능함.
- 다만, 동 장비를 모두 갖춘 후 추가적으로 소독대상의 상황에 맞는 소독 장비를 갖추는 것은 가능함.

6. 소독업의 변경 신고

질의 41. 소독업 종사자 변경 시, 소독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소독업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함.
- 이 중 인력 기준은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소독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 지자체가 소독업 관리를 위하여 소독업 종사자 변경신고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자체적인 조례 등을 통해 종사자 변경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대표자 외에 소독업 종사자가 1명인 소독업체의 경우 종사자가 퇴사하면 법적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규 종사자가 고용될 때까지 소독업을 영위할 수 없음.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최대 3.5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음.

질의 4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변경등록 사항으로 11가지를 열거하면서 개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업 변경신고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 명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함.
 - 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소독업 신고가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양수인은 새로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함. 단,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는 변경신고로 같음이 가능함.**

질의 43.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를 위해 대표자를 추가 하는 경우 소독업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변경사유'의 '기타'란에는 공동대표를 위한 대표자 추가 사항도 포함되므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과 함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질의 44. 소독업 신고 후 시설 위치를 변경한 경우 소독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26호]에 따라 “소재지”는 변경신고 사항임. 따라서 소독업 신고 시 소재지와 위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7. 소독업자(종사자)의 소독 실시

질의 45. 음식을 납품하는 차량을 소독할 경우 **차량소독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서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별지 제28호] 서식을 활용하여**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면 됨.

질의 46. 소독업체에서 소독약만 팔고 실제 소독은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 소독업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의무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80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임.

질의 47. 소독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해도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존방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기록·보존을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 전산 기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1. 소독제(소독 약품)

질의 48. 소독 시 사용가능한 소독약품은 무엇인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독의 방법에서는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상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식약처 허가 약제 조회 사이트: <http://ezdrug.mfds.go.kr>

*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질의 49.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별표 6]의 “라. 약물 소독”에서 약물소독 시 소독력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석탄산은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살균력은 안정적이지만 냄새, 독성, 피부점막 자극, 금속부식 등 단점이 많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소독약 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란 석탄산 3% 수용액의 살균력에 준하는 약제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덧붙여,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허가 상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식약처 허가 약제 조회 사이트: <http://ezdrug.mfds.go.kr>

*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8. 소독업자(종사자)의 교육

질의 50. 소독업자이면서 소독업무 종사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교육만 받으면 되는지, 종사자로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무종사자의 지위를 모두 겸하고 있는 자는, 각 지위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고, 양 지위를 1인이 가지고 있다는 우연적 사정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부과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독업무종사자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

질의 51.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교육을 한명만 받아도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이 때, 소독업 신고증 상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자 모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질의 52. 하나의 법인에 소독업 신고자와 법인 대표자가 다른 경우, 소독업자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표권이 있는 소독업자는 모두 소독업자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민법과 (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소독업 신고자와 법인 대표권이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독업 신고자만 교육을 받으면 됨.

- 덧붙여, 종사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리하는 것은 불가함.

질의 53.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방역소독을 할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소독업은 특성상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 종사자는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일용직일지라도 올바른 소독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업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54.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소독업 종사자가 될 경우 소독업 종사자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와 달리 종사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시기성과 환경변화를 고려,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과 관련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더욱 안전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종사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임.
- 따라서 이미 대표자 교육을 받으신 이가 종사자가 되신 경우라면 추가로 종사자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종사자는 직전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준수 하여야 함.

질의 55.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대표자)가 10년이 지난 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독업 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 단서조항으로 ‘신고를 한 날이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폐업 후 다시 소독업 신고 시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던 소독업자라면 새로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새로이 신고를 하는 시점이 교육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대표자 교육을 받아야 함.**

질의 56. 소독업무 종사자가 소독업 교육을 받은 후 타 소독업소로 이직할 경우, 교육을 받은 시점부터 3년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종전의 소독업소 재직 중에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았고, 그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 새로운 소독업소에 종사자로 종사하게 되더라도 보수교육을 받은 지 3년 이내라면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질의 57.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단체가 방역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 원칙적으로 소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되, 소독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독의 특성상 독성물질과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못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일지라 하더라도 소독업자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음.
-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종사자도 6개월의 교육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는 있음. 다만 장기 방역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9.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질의 58. 소독의무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처벌규정이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7]의 소독의 기준, 방법 및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59. 허가되지 않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 경우 처벌기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독의 방법에서는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약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식약처 허가 약제 조회 사이트: <http://ezdrug.mfds.go.kr>

*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8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됨.

질의 60. 소독업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59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의 관련 행정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로 구분하여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별표 10]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
| | | 1차 | 2차 | 3차 |
|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 |

질의 61. 지자체(보건소)는 소독의무시설에 소독의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소독의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소독을 하지 못한 건데
 과태료 부과는 억울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의무를 미리 알리도록 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일선 지자체에서 관할 소독업자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대법원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6949, 판결), 위반자가 해당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 처분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

부록

● “소독 관련 법령”

-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
(약칭: 감염병예방법)
- 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I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IV. 별표, 별지 53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5.8.11. 법률 제13474호

제51조(소독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 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7.6.>

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8.11. 대통령령 제27445호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6.1.6.]

Ⅲ.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16호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9.23.>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IV. 별표 및 별지

[별표 3] <개정 2016.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1호 | 50 | 100 |
| 나.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 500 | 1,000 |
| 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2호 | 50 | 100 |
| 라.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3호 | 25 | 50 |
|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4호 | 15 | 30 |

[별표 5] <개정 2014.12.31.>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바. 병실의 바닥 등
 -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
 -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
 -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병실의 바닥 등
-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 사. 서족(鼠族)이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별표 6] <개정 2013.3.23>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덮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별표 기 <개정 2015.7.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 | | |
|------------------------------------------------------------------------------------------------------------------------------------------------------------------------------------------------------------------------------------------------------------------|---------------|---------------|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 |
|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별표 8] <개정 2014.12.31.>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 <2014.12.31.>
 -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 16시간 |
|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 관리 | 8시간 |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II.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
|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소 폐쇄 |

| | | | | |
|--------------------------------------------------------------------------------|----------------------|-------------|---------------------|---------------------|
| <p>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p> | | <p>시정명령</p> | <p>영업정지 1개월</p> | <p>영업정지 3개월</p> |
| <p>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p> | <p>법 제59조제1항</p> | | | |
| <p>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p> | | <p>시정명령</p> | <p>영업정지 3개월</p> | |
| <p>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p> | | <p>시정명령</p> | <p>영업정지 1개월</p> | |
| <p>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 <p>법 제59조제1항</p> | <p>시정명령</p> | <p>영업정지 1개월</p> | <p>영업정지 3개월</p>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독업 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명칭 | | | |
| 소재지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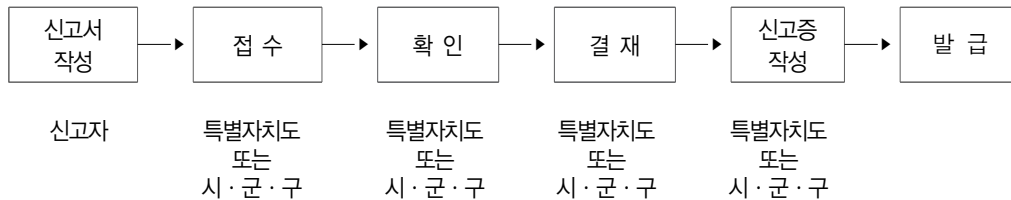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
| 제 | 호 |
| 소독업 신고증 | |
| 1.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2. 상 호: | |
| 3. 소재지: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

210mm×297mm[보존용지(2종)120g/m²]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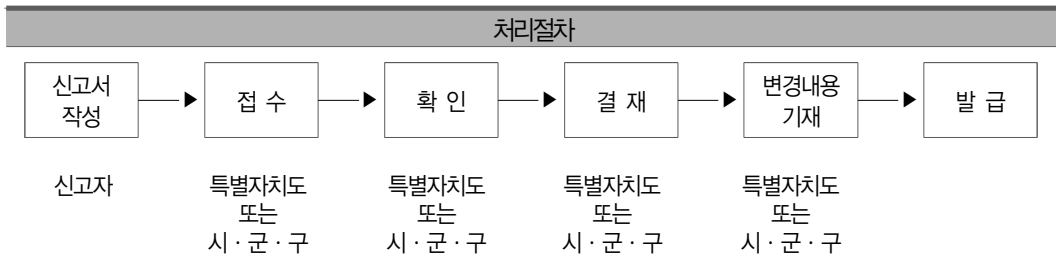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신고자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 상호(명칭) | | |
| | 소재지 | | |
| 변경 사유 | []소재지 []명칭 []기타()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